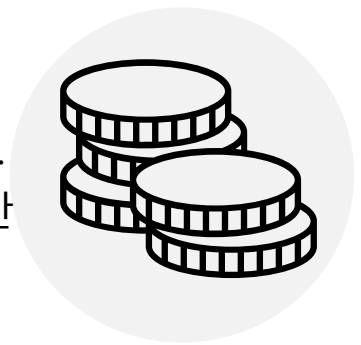


2025.07.11

2026년 최저임금 안내

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없이
노·사·공 합의로, 시급 **10,320원**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
방법 등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


2026년 최저임금 결정

시간급 최저임금 : 10,320원 (2025년 대비 2.9% 인상)

일급 : 82,560원(1일 8시간 기준)

월급 : 2,156,880원(1주 40시간 기준, 주휴 포함)

※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

적용연도	시간급 최저임금	월 최저임금	인상률
2024년	9,860원	2,060,740원	2.5%
2025년	10,030원	2,096,270원	1.7%
2026년	<u>10,320원</u>	<u>2,156,880원</u>	<u>2.9%</u>

최저임금 위반 시

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.

회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해당 부분은 **무효**이며,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(「최저임금법」제6조)

최저임금 위반,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(「최저임금법」제28조)

최저임금 주지의무

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회사는 최저임금액,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. (「최저임금법」제11조)
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「최저임금법」제31조)

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(2026년 10,320원)

◆ 시간급 근로자

판단기준 : 시급을 최저임금 시급과 직접 비교

예시 : 시급 10,000원을 지급하는 경우

-> 10,320원에 미달 / **최저임금법 위반**

※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 최저시급은 **12,384원**이 됩니다.

◆ 일급 근로자

판단기준 : 일급을 **1일 소정근로시간**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 시급과 직접 비교

예시 : 1일 8시간 근무, 일급 80,000원의 경우

$80,000\text{원} \div 8\text{시간} = 10,000\text{원}$

-> 10,320원에 미달 / **최저임금법 위반**

◆ 월급 근로자

판단기준 : 월급을 **1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** 수로 나눈 금액과
최저임금 시급을 비교

예시 : 1주 40시간 근무(주휴 포함), 월급 2,100,000원의 경우

$2,100,000\text{원} \div 209\text{시간}[(\text{주}40\text{시간} + \text{주휴}8\text{시간}) \times (365\text{일} \div 7\text{일}) \div 12\text{월}]$
 $= 10,048\text{원}$

-> 10,320원에 미달 / **최저임금법 위반**

※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

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까지 **최저임금의 90%**(월 1,941,192원)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
한편,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시에는 **실제 근로시간(주휴수당포함) * 최저임금의**
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

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65, B동 907호(갈현동, 상상자이타워)
주차 : 해당건물 B1~B4층 주차장

대중교통 이용 시

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버스 (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소에서 도보15분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 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, 일반 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 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상담 월~금 09:00~18:00
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

전화 02-6949-1227
 팩스 02-6949-1678

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
 cpla21@hrhanalaw.com

김재연 공인노무사
 cplaeony@hrhanalaw.com

황금별 공인노무사
 gold@hrhanalaw.com

이정빈 공인노무사
 cplabin@hrhanalaw.com

신형재 공인노무사
 cplahj@hrhanalaw.com